

## FSS/2112-01 : 매출 허위계상

- 쟁점 분야: 매출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
- 결정일 : 2013년
- 회계결산일 : 2011.1.1.~2011.12.31.

###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방송 및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원활한 투자 유치를 위해 연구개발 매출 및 제품 매출을 과대계상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리기로 계획하였다.

회사는 와이브로 단말기 기술 등 연구개발 매출(라이선스료 수입)과 관련하여 사업 허가 실패, 대리점 계약 이행 무산, 사양 미달로 인한 납품 거절 등의 이유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거래처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관련 연구개발 매출 1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허위로 수취한 라이센스료를 반환하기 위해 사용가치가 없어 판매가 불가능한 재고자산을 동 거래처로부터 구입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입거래를 계상하거나 주식취득을 가장하는 방법으로 거래대금을 반환하였다.

제품매출의 경우 ’11년 중간거래처(‘11년중 폐업)에 제품의 인도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으나 최종 거래처의 납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여 납품 계획이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취소하지 않고 매출 1억원을 계상하였다.

###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제품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수익인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매출(13억원)을 인식하였다.

###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18호(수익)에 문단29 및 문단30에 따르면, 자산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함으로써 창출되는 로열티수익은 거래와 관련된 경제적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며, 관련된 약정의 실질을 반영하여 발생기준에 따라 인식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의 상황의 효과를 충실히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회사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획득 실패 등으로 라이선스 계약이행 여부가 불확실하고, 라이선스 수수료를 수취하지 못하는 등 수익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연구개발 매출을 과대계상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회사가 제품 납품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처의 납품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였고 실제 제품을 배송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근거로 허위 매출을 계상하였다고 판단하였다.

####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재무제표감사의 일반원리 및 감사의 범위) 문단2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1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매출과 관련한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 등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하였으나 로열티 수익은 기술개발, 납품 등 계약의 이행 여부에 따라 발생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하므로 계약 내용 및 진행과정 등에 대하여 상세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매출이 발생하기 위한 필수적인 계약 요건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다.

#### 5. 시사점

라이센스 계약의 법적 형식 및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계약조건 이행 등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높고 수익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한 후에 매출을 계상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